

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중 “소방서장 및 농촌진흥원장”을 “소방서장 및 지방공무원교육원장, 농촌진흥원장, 보건환경연구원장,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, 도로관리사업소장, 산림환경사업소장, 농축산사업소장”으로 한다

제2조제4항중 “농촌진흥원장”을 “지방공무원교육원장, 농촌진흥원장, 보건환경연구원장,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, 도로관리사업소장, 산림환경사업소장, 농축산사업소장”으로 한다

제3조 조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무중 인사권한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내용을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

제5조중 “소방서장 및 농촌진흥원장”을 “소방서장 및 지방공무원교육원장, 농촌진흥원장, 보건환경연구원장,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, 도로관리사업소장, 산림환경사업소장, 농축산사업소장”으로 한다

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